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나2829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선경, 허범행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동아, 박준성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2. 1. 12.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1387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원고 A에 대하여는

103,479,635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1,354,344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79,635원, 원고 B에게 101,354,3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주위적 청구로 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위 확장한 청구를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앞서 확장한 하나의 청구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4.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0. 27.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2. 8.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0. 27. 퇴사하였다.

2) 소외 회사가 2016. 2.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A에게 2017. 5. 1.부터 2017. 10. 27.까지의 임금 27,087,641원과 퇴직금 62,033,550원 합계 89,121,191원을, 원고 B에게 2017. 5. 1.부터 2017. 10. 27.까지의 임금 23,528,337원과 퇴직금 61,769,340원 합계 85,297,677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104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8. 6. 1.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89,121,191원 및 이에 대한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B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단1051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8. 5. 3.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85,297,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원고들 임금 판결’이라 한다).

그 후 원고들 임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 A은 2018. 7. 4. 4,000,000원(소액채당금), 2018. 10. 11. 14,000,000원(일반채당금)을, 원고 B은 2018. 6. 5. 4,000,000원(소액채당금), 2018. 10. 11. 14,000,000원(일반채당금)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임금 등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20. 4. 8. 원고 A은 11,373,488원, 원고 B은 7,335,678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10. 15. 소외 회사에 ‘F 건설공사’ 중 지하주차장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8. 1. 13.까지(2017. 6. 23.자 변경계약으로 기간 연장), 공사대금 13,529,965,000원으로 약정하여 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7. 1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16,017,23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7. 17.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E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2017. 7. 18. E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3) E과 소외 회사는 2017. 10. 1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4) 피고는 2017. 9. 15.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859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8. 5. 2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390,774,453원으로 인정하면서 “E은 피고에게 204,745,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으로부터 위 판결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8, 갑10-1, 2, 갑12-1~3 내지 갑15-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7. 10. 당시 원고들의 2017. 7. 11. 이후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장기간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 전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체불하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인 2017. 10. 27. 원고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들 임금 판결에 따라 확정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

가) 갑3 내지 갑5, 갑9-1~4, 갑21-1~8, 갑26 내지 갑38, 갑40-1, 2, 갑42-1, 2, 갑43-1, 2, 을4, 을5, 을7, 을9, 을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E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390,774,453원, 평택시 G 대지와 그 지상 3층 건물 427,961,120원, 군산시 H아파트 I호 80,000,000원, 2015년식 오토 1톤 봉고트럭 10,000,000원 등 합계 908,735,573원 정도이었다. 반면 2017. 7. 10. 당시 소극재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527,123,088원이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채권자	채권액	비고
K	9,168,902원	갑9-2, 갑26
L	4,926,414원	갑9-2, 갑27
M	31,465,399원	갑9-2, 갑28
N	6,807,154원	
O	22,011,907원	
P	3,116,458원	
Q	9,257,784원	
R	8,514,910원	
S, T	2,553,155원	갑29
U	12,611,155원	갑30
V	16,989,562원	갑31
W	10,661,199원	갑32
X	4,014,353원	갑33
Y	4,553,174원	
Z	4,839,630원	
AA	10,213,592원	
AB	5,701,775원	갑34
AC	2,569,735원	
AD	6,892,589원	
AE	3,020,386원	
AF	5,024,671원	갑35
AG	14,971,940원	
AH	15,007,105원	갑36
AI	5,474,910원	
AJ	2,978,297원	
AK	6,275,802원	
AL	5,490,304원	
AM	1,533,692원	
평택세무서	502,589,600원	갑37
중소기업은행	965,892,369원	갑38
주식회사 AN	186,028,500원	갑40-1, 2

주식회사 AO	102,740,000원	갑21-1~8
국민건강보험공단	133,422,320원	갑42-1, 2
평택시	9,368,240원	갑43-1, 2
원고 A	89,121,191원	갑3
원고 B	85,297,677원	갑4
피고	216,017,237원	을4, 을5, 을7, 을9, 을10
합계	2,527,123,088원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89,121,191원의 채무, 원고 B에 대한 85,297,677원의 채무는 전부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을4, 을5, 을7, 을9, 을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6. 11. 3.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까지 511,249,74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부터 2017. 9. 27.경까지 9,324,41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까지 물품대금 295,202,04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인 2017. 8. 17. 물품대금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216,017,237원[= 511,249,747원 - 295,202,040원 - 30,470원(2017. 6. 14.자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에 발행됨)]이고, 이 사건 채권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216,017,237원인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는 종전에 비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하였고, 그로부터 약 2달 후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 사건 채권 금액이 동일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대물변제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한 건축자재 공급기간이 약 1~2개월 밖에 남지 않았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약 2개월 후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담보 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건축자재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남은 피고의 건축자재 공급기간 및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량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계속 공급받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대물변제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시기,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와 구체적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에 피고에게 E에서 발급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월별기성정산내역을 제시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게 추가로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도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노허브직관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16,017,237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없었다면 피고는 더 이상 소외 회사에 위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17. 8. 30.경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201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신청서에는 ‘소외 회사가 E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채권가압류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7. 9. 15. E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④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한 물품은 511,249,747원 상당인데 반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한 물품은 9,324,410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면서도 건축자재 등을 추가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을6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E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은 피고에게 204,745,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E으로부터 위 확정된 판결금 204,745,95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들 임금 판결에 따른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 계산표와 같이 원고 A의 채권액은 104,618,469원, 원고 B의 채권액은 102,431,6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각 채권액 이내로서 원고 A이 구하는 103,479,635원, 원고 B이 구하는 101,354,344원의 각 범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79,635원, 원고 B에게 101,354,3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이근수, 판사 박남천

- 채권양도계약 -

피고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
금채권 390,774,453원 중 216,017,237원에 대한 2017. 7. 10.자 채권양도계약, 끝

- 계산표 -

원고 A

단위(원)

[illegible]

원고 B

단위(원)

[illegible]

